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. 9 선고 2019가단39674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1. 주식회사 B

판결 선고 2020. 1. 9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4,280,742원 및 그 중 292,836,617원에 대하여 2018.7. 6.부터 2019. 10. 1.까지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각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이영풍